

33. 교통영향평가지침증개정

건설교통부고시제1999-4호 1999. 1. 15.

교통영향평가지침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
식평가에 의한다.

1. 영 제13조제1항 별표1 제1호 가목의
사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
 - 가. (17)도시계획사업중 공원의 건설
 - 나. (23)기타사업
2. 영 제13조제1항 별표1 제2호 가목의
시설중 다음 각목의 시설
 - 가. (2) 종교시설중 교회, 성당을 제외
한 시설물
 - 나. (3) 의료시설중 병원, 종합병원을
제외한 시설물
 - 다. (13) 교육연구시설중 학원, 도서관,
초.중.고교
 - 라. (14) 저장시설중 저장탱크
 - 마. (17) 사회복지시설
 - 바. (18) 위험물 판매시설중 주유소,
가스충전소
 - 사. (20) 위생시설
 - 아. (21) 장례관련시설

자. (22) 청소년 수련시설

차. (23) 동물관련시설

카. (24) 기타시설

3.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지내에 설
치하는 개별 시설물
4. 영 제13조제1항 별표1 제1호 나목 및
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사업 및 시설
(다만, 확장 또는 증축규모가 별표1 제1
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
최저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)
5.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
의 대상 사업 또는 시설

②약식평가의 실시방법 및 절차등은 다
음 각호에 의한다.

1. 시간적 범위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
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평가목표년도까
지로 한다.
 - 가. 시설 : 완공후 1년 및 5년
 - 나. 사업 : 완공후 1년, 5년 및 10년
2. 공간적범위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
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범위가상으로
할 수 있다.

가. 시설 : 당해 시설물의 주된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4개 교차로 및 그 범위 내의 가로

나. 사업 : 당해 사업지의 주된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8개 교차로 및 그 범위 내의 가로

3.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등 교통 환경의 조사분석은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.

4.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교통유발원단위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3개이상의 관련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산출한다. 단, 관련자료가 모두 최근 3년이내의 실측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1개이상 조사하여야 한다.

③영 제16조제2항 제2호, 제3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약식평가대상사업 또는 시설의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가서의 내용항목을 교통개선대책의 변경내용 및 변경이유, 종합개선안도, 개선효과, 개선안의 시행계획등으로 할 수 있다.

제30조제3항중 “색상도면으로 한다.”를 “가급적 색상도면으로 한다.”로 하고, 제6항중 “끝문에는 평가용역계약일, 용역대가, 평가용역 수행기간,”를 “끝문에는 평가용역 수행기간,”으로 하며, 제7항중 “이 경우 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책임자 또는 평가보조자로 등록되지 아니

한 자를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.”를 삭제한다.

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제2항중 “아니한 경우”를 “아니하거나 평가자가 제시한 교통개선대책보다 유효한 다른 교통개선대책이 있는 경우”로, “할 수 있다.”를 “하여야 한다.”로 하며, 제4항중 “상정하여야 하며, 사전검토로 인하여 평가서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지연하여서는 안된다.”를 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①건설교통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의위원회에 송부하여 평가서가 이 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와 평가자가 제시한 교통개선대책이 적정한지 등에 대하여 사전검토하게 할 수 있다.

제3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가급적 사전검토에서 지적한 내용을 중심으로 심의하여야 하며, 사전검토에서 제시하지 않은 의견을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기하여 심의를 지연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37조제1항 관련 별표5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제38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5]

교통개선대책의 이행허용오차의 범위(제37조제1항 관련)

항 목	허 용 범 위	기 타	
가 로	도로 신설	-연장 또는 5%이하 축소 -확폭 또는 차로당 30cm 이하 축 소	- 교차지점신설시 및 차로수의 축소 시는 제외
	도로 확폭	-연장 또는 길이의 5%이하 축소 -확폭 또는 폭원의 5%이하 축소	- 단, 차로폭 2.75m 이상 유지
	교차로의 운영	-차로폭 5%이하 축소 -가각의 회전반경 5%이하 축소 -좌회전포켓 연장 또는 5%이하 축소	- 단, 차로폭2.75m이상 유지 - 좌회전 또는 우회전 전용차로의 폐 지불가 - U-Turn, P-Turn체계변화 불가 (단, 사업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함) - 신호등 설치의무 변경불가
진 출 입 동 선	진출 입구	-위치 : 10m이하 변경 -폭원 : 5%이하 축소 또는 25%이 하 확폭 -가각부 : 5% 이하 축소	- 단, 교차로 가각부측으로 변경 불가
	진출입로 (진출입 구-주차 장간 연결로)	-위치 : 10m이하 변경 -폭원 : 5%이하 축소 -가각부 : 5%이하 축소	
	진출입동 선체계		- 통행체계 변경불가(일반↔양방,방향 전환 등)
	완화차로 (Set Back 포함)	- 길이 : 5%이하 축소 - 폭원 : 5%이하 축소	- 위치변경 불가

항 목		허 용 범 위	기 타
주 차	주차면수 의 추가	- 심의의결대수의 5%이하 증가	- 단, 규모증가비율 적용가능
	주차면수 의 제거	- 심의의결대수의 5%이하 제거	- 단, 규모감소비율 또는 법령 및 조례 의 제.개정에 의한 법정주차대수 감 소인 경우 제거 가능
	구획위치 조정 및 재배치	- 심의의결대수의 30%이하	
	주차동선	- 주차통로폭 : 5%이하 축소 - 주차통로위치 : 5m이하변경 - 회전반경 : 5%이하 축소	- 단, 주차장법상 최소 통로폭 이상이 어야함 - 진. 출입구 추가설치 불가 - 통행체계 : 변경불가(진출입동선체계 와 동일) - 종단구배 : 주차장법 범위내 변경가능 - 램프회전방향 변경불가 - 램프형태 변경불가(원형↔직선) - 램프 진출입방향 변경불가
	램프설치		
	기계식 및 자차 주식비율	- 자주식 비율증대 또는 5%이하 축소	
대 중 교 통	버스정류 장 설치	- 길이(Taper포함) : 5%이하 축소 - 폭 (Taper포함) : 5%이하 축소 - 위치(Taper포함) : 10m이하 변경	- 단, 사업지 진출입구측 또는 교차로 가각부측으로 변경 불가 - Set-Back시는 기존보도폭 유지
	택시정류 장 설치	- 길이(Taper포함) : 5%이하 축소 - 폭 (Taper포함) : 5%이하 축소 - 위치(Taper포함) : 10m이하 변경	- 단, 사업지 진출입구측 또는 교차로 가가부측으로 변경 불가 - Set-Back시는 기존 보도폭 유지
	대중교통 노 선조정.추가		- 지방자치단체등과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가능

항 목		허 용 범 위	기 타
보행 및 자전거 도로	보도 설치	- 연장 : 5%이하 축소 - 폭원 : 5%이하 축소	- 위치변경 불가
	보도 확폭	- 연장 또는 길이의 5%이하 축소 - 확폭 또는 폭원의 5%이하 축소	- 위치변경 불가
	보행동선 체계	- 연장 및 축소	- 단, 단절불가
	횡단보도 신설	- 폭원 : 10%이하 축소 - 위치 : 10m이하 변경	- 사업지내 또는 사업지와 직접 접하고 있는 시설에 한함 - 신호등설치조건 변경불가
	자전거도로 설치	- 연장 또는 길이의 5%이하 축소 - 확폭 또는 폭원의 5%이하 축소 - 위치 : 10m이하 변경	- 사업지내 또는 사업지와 직접 접하고 있는 시설에 한함
	자전거보관소 설치	- 계획면수의 5%이하 축소	- 위치변경 가능
	보행자전용도로 설치	- 연장 또는 길이의 5%이하 축소 - 확폭 또는 폭원의 5%이하 축소 - 위치 : 10m이하 변경	- 사업지내 또는 사업지와 직접 접하고 있는 시설에 한함
안전	과속방지턱 시설	- 연장 또는 길이의 5%이하 축소	- 심의시 조건부여된 시설의 설치의 무 변경불가 - 각종 교통안내 및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할경찰서 등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가능
	미끄럼방지시설		
	각종 안내판 시설		
	각종 경고등 설치		
	노면파킹, 표지병		
	기타 가드레일등 안전시설		